

6.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3 . 9 . 19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
재무 건설 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9월 4일 ·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3년 9월 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3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(2003. 9. 19)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황 의 진)

가. 개정이유

- 지방재정법시행령(2002.11.29)의 개정에 따라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과 구유재산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조정하여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고,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(안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단서)
- “도시재개발법 및 도시계획법”이 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”로 개정(2002.12.30)됨에 따른 용어정리(안 제21조의2, 안 제22조)
- 대부료의 특례조항 중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단서조항 신설(안 제22조의2 제1항)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상의 용어로 통일.(안 제24조의2)
 - 세입 · 세출예산의 현금 ⇒ 세입 · 세출의 현금
-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 차등인하 및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 설정.(안 제27조 제1항)
-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“신탁의 종류” 관련조문 변경.(안 제30조의3) 다. 개정근거
-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788호, 2002.11.29)
- 관련지침 : 재무45500-631(2003.2.13)호에 의한 정비방침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: 검토보고서 참조

(보고자 : 전문위원 정 성 수)

4. 質疑 및 答辯 要旨

(질의자 : 오 금 남 위원, 오 필 근 위원)

(답변자 : 재무국장 황 의 진)

문) 조례개정의 취지가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금리를 낮추는데 연체이자율을 높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답)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법규적용 시 돌출되는 문제점을 서울시로 건의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문) 관련법이 2002.12.30일에 개정되었는데 우리 구 개정조례안을 이제서야 제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?

답)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.

5. 討 論 要 旨 : 없 음

6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7. 少數 意見의 要旨 : 없 음

8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